

「2022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」 수정(안) 신규대조표

쪽수	현행	수정(안)	수정 이유 (근거 및 사유)
II. 방과후학교 운영 - 1. 프로그램 운영 개요			
23	<p>사. 교재 사용</p> <p>○ 프로그램 운영시 필요한 교재 및 자료는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학교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를 거쳐 외부교재(단가 포함) 및 재료를 활용할 수 있음</p>	<p>사. 교재 사용</p> <p>○ 프로그램 운영시 필요한 교재 및 자료는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교재교구 선정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를 거쳐 외부교재(단가 포함) 및 재료를 활용할 수 있음</p>	<p>■ 가이드라인과 통일</p>
II. 방과후학교 운영 - 2. 개인위탁			
45-46	<p>바. 프로그램별 강사 선정 및 위수탁계약 체결</p> <p>2) 위·수탁 계약체결</p> <p>가) 외부강사 계약 체결 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(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)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임</p> <p>3) 개인위탁 계약시 구비 서류</p> <p>가) 개인위탁 외부강사의 경우</p> <p>③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[흉부 X-ray 포함] 1부(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)</p> <p>※ 보건소, 병원 등 발급 기관에 관계없이 ‘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’ 가능 (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함)</p>	<p>바. 프로그램별 강사 선정 및 위수탁계약 체결</p> <p>2) 위·수탁 계약체결</p> <p>가) 외부강사 계약 체결 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(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, 국민건강검진결과서 가능)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임</p> <p>3) 개인위탁 계약시 구비 서류</p> <p>가) 개인위탁 외부강사의 경우</p> <p>③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[흉부 X-ray 포함] 1부(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)</p> <p>※ 보건소, 병원 등 발급 기관에 관계없이 ‘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’ 가능(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함)</p> <p>※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‘국민건강검진결과서’ 가능(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, 채용신체검사서 병력 요건 확인 필요)</p>	<p>■ 국민권익위원회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('21.7.20.) 일부 반영</p> <p>■ 원어민강사(42쪽), 방과후 학교 업무보조인력(103쪽) 관련 내용에도 동일하게 수정</p>

쪽수	현행	수정(안)	수정 이유 (근거 및 사유)
46	<p>바. 프로그램별 강사 선정 및 위수탁계약 체결</p> <p>3) 개인위탁 계약시 구비 서류</p> <p>다) 현직교원(기간제 교사 포함)의 경우: 타교 재직교원의 경우</p> <p>①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</p> <p>② 계약서 2부 또는 위촉공문(단위학교에서 준비)</p> <p>③ 통장 사본 1부</p> <p>④ 재직증명서 1부</p>	<p>바. 프로그램별 강사 선정 및 위수탁계약 체결</p> <p>3) 개인위탁 계약시 구비 서류</p> <p>다) 현직교원(기간제 교사 포함)의 경우: 타교 재직교원의 경우</p> <p>①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</p> <p>② 계약서 2부 또는 위촉공문(단위학교에서 준비)</p> <p>③ 통장 사본 1부</p> <p>④ 재직증명서 1부</p> <p>⑤ 소속기관장 겸직허가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·제26조 반영
IV. 회계 관리			
114-117	<p>나. 주요업무 세부 안내</p> <p>○ 신설</p>	<p>나. 주요업무 세부 안내</p> <p>○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적용 관련 안내자료(근로복지공단 제공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